

제3차 ILO 워킹그룹회의 참가 결과 보고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12.9.24)

I. 회의 개요

□ ILO 워킹그룹회의* 개요

* 고용통계에 관한 국제표준 채택(제19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 '13.10월 제네바)에 앞서 고용 및 실업통계의 국제표준을 논의하는 실무회의(Working Group for the Advancement of Employment & Unemployment Statistics 3rd Meeting)

○ 일시 및 장소

- 2012.9.3(월) ~ 5(수), 국제노동기구(제네바)

○ 회의 참가 현황

- 한국, 미국, 프랑스, 호주, 중국, 일본 등 29개국 및 ILO, OECD, EUROSTAT 등 50여명 참가

□ 출장개요

○ 출장자 및 출장기간 : 고용통계과 빈현준서기관, 9.2(일)~7(금)

○ 주요 일정

일자	주요 일정
9.2(일)	인천 출발 → 제네바(스위스) 도착
9.3(월)~5(수)	ILO워킹그룹회의 참가
	Part I : Work and labour force: scope and indicators Part II : Conceptual framework and measurement guidelines
9.6(목)~7(금)	제네바(스위스) 출발 → 인천 도착

II. 주요 논의사항

□ 새로운 개정안의 목표

- 노동시장과 노동저활용*을 모니터링하는 기준 마련

* 영문으로는 과거 Labour underutilization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들어 Unmet demand for employment라는 표현으로 전환되어 사용되고 있음

-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모든 일을 측정할 수 있는 포괄적 지표 제공

- 다른 형태의 일*에 참여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생산과의 관계 분석

* 모든 Work 중에서 Employment를 제외한 나머지의 일을 의미

□ 노동통계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일	주요 목적	생산에 기여한 활동
① 취업	수입 창출	SNA 생산계정 포함
② 상품의 자가 생산	자가 가구의 사용	
③ 무급수습업무	기술 및 경험 획득	
④ 자원봉사 - 시장 및 비시장 단위 - 가구단위 : 타인소비를 위한 상품생산 타인소비를 위한 서비스생산	타인에게 서비스 및 편의 제공	
⑤ 서비스의 자가 생산	자가 가구를 돌봄	SNA 생산계정 불포함
⑥ 기타 다른 형태의 일	기타	

① 취업	②~⑥ 다른 형태의 일	
임금근로자	취업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 예) 상품의 자가 생산, 무급수습업무, 자원봉사, 서비스의 자가 생산, 기타	
비임금근로자		
Employed persons	Not employed persons	
Employed persons	Unemployed persons	Outside the labour force

- 고용통계 상의 일(Work)을 국민계정체계(SNA) 내 생산활동의 범위와 일치시킴으로서 생산통계와의 직접 통합이 가능
 - 일을 생산 활동의 종류와 활동의 목적에 따라 6가지로 구분
 - 모든 형태의 일을 측정 목적에 따라 취업, SNA 생산계정에 포함되는 일, SNA 생산계정에 불포함되는 일로 구분
 - Job은 개인이 수행한 업무의 집합으로 수입있는 일에 국한되지 않으며 한 사람은 단수 또는 복수의 Job*을 가질 수 있음
- * Employment + Other forms of work(상품의 자가생산, 무급수습, 자원봉사 등)

□ 인구

- 조사대상을 거주지 개념의 인구(the resident population)와 근무지 개념의 인구(the domestic population)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음
- * 유럽과 같이 국경간 왕래가 용이한 지역에서는 두 개념에 따라 지표에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국경간 왕래가 용이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두 지표간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움(현재 지역별고용조사에는 적용)
- 인구통계 및 SNA와의 일관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일반주민, 군인, 시설거주인구 등도 고용통계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함

□ 연령

- 노동연령인구(Working age population)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연령의 상.하한에 대한 기준이 필요
- 연령하한에 관한 기준은 국내법 및 규정, 의무교육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연령상한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생산활동의 범주를 포괄할 수 있도록 두지 않기로 함
- 다만 미성년 노동이 보편화된 국가의 경우 고용통계와 SNA 생산계정과의 정합성을 위해 최소연령이 낮아질 수도 있음

Ⅲ. 주요 용어의 정의

【일의 형태(Form of work)】

□ 취업(Employment)

○ 취업자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지급되어지는 급여나 수익(또는 가족의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일을 한 특정연령(1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

- 적어도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at work),

-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직업을 갖고 있고, 구체적 사유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경우(not at work)

○ 일시휴직(temporary absence)은 휴직사유 및 경과기간에 따라 결정

- 기한제한 없는 사유 :

자신의 질병 및 부상, 휴일(휴가, 연가), 육아휴가(휴직)

- 국내상황을 고려하되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 사유 :

a) 교육 및 다른 사람 돌봄을 위한 개인적 휴가

b) 파업 및 폐업, 일시해고를 포함한 경제활동 감소

c) 기상악화, 기계 및 전력공급 중단, 원자재 및 연료 부족 등으로 일의 중단 및 해체

○ 무급가족종사자는 가구의 소득창출을 위해 노동을 투입했으므로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취업자로 간주해야함(일시휴직 가능)

○ 유급의 도제(Apprentices), 인턴(Interns), 수습사원(Trainees)은 훈련이 회사내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이 있다면 취업자로 간주

- 유급의 고용촉진제도(employment promotion schemes) 참여자의 경우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이 없더라도, 훈련기간 이전에 회사가 이들을 고용했고, 직장복귀 가능성이 보장되어있다면 취업자로 간주
- 단일경제단위(Single economic unit)에서 그 일 또는 다른 일에 필요한 훈련을 받은 사람의 경우 일한 취업자로 분류하고,
 - 초과근무 및 교대제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훈련을 받는 사람은 노동시간 측정에 대한 국제기준에 따라 일하지 않은 취업자로 분류
 - * 제18차 ICLS에서 의결한 노동시간 측정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르면 실제 근로시간에는 직접시간(Direct hours), 관련시간(Related hours), 지연시간(Down hours), 휴게시간(Resting hours)이 포함됨
 - ** 직무교육과 같이 생산시간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시간은 관련시간으로 보아 실제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직무교육 이외의 교육은 실제근로시간에서 제외
- 소득창출을 위해 주로 상품을 생산한 사람이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상품을 일부 사용하더라도 상품의 자가생산에서 배제
- 다른 형태의 일(Other forms of work)에 주로 종사하더라도 동시에 취업에 해당되는 일을 한 경우 취업자로 분류

※ 취업자로 간주되지 않는 사례

- a) 무기한 해고(indefinitely lay-off) : 직장복귀 가능성이 없음
- b) 오프시즌 기간 동안의 계절적 취업자 : 소득을 창출하는 일과 관련된 활동을 중단
- c) 휴직기간이 통상의 기준기간을 초과한 경우
- d) 취업과는 다른 형태의 일에만 배타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 상품의 자가생산(Own production of goods)

- 상품의 자가생산은 자신이나 자신의 가구의 최종소비를 위해 무급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포함

- a) 경작, 사냥, 산림채취, 낚시
- b) 가구, 옷, 토기, 접시, 수공예품, 보트, 카누 등의 제작
- c) 거주지, 농장 건설
- d) 물대기, 장작채집

- 상품의 자가생산자는 조사대상기간 중 적어도 1시간 이상 상품의 자가생산활동을 한 일정연령 이상의 사람으로,
 - 상품의 일부를 팔거나, 물물교환을 하더라도 주 목적이 자신과 자신의 가구소비를 위해 상품을 생산한 경우라면 취업자가 아닌 상품의 자가생산자로 분류되어야함

□ 무급의 수습업무(Unpaid trainee work)

- ①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이 있으나, ② 무급이며, ③ 경험 및 기술획득을 위해 ④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경제단위에서 행해진 일
- 무급의 수습업무자는 조사대상기간 중 적어도 1시간 이상 무급의 수습업무를 한 일정연령 이상의 사람으로 도제(Apprentices), 인턴(Interns)이 포함
 - 다만 무급의 수습업무자가 그들의 업무성과의 양이나 질에 관계가 없거나, 시장에서 받는 급여의 가치와 동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음

□ 자원봉사(Volunteer work)

- 자원봉사는 비강제적인 활동으로, 무급이면서, 기관을 통하거나 직접 행해지며, 자신의 가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

- a) 시장 또는 비영리기관에서의 자원봉사
- b) 가구에서 타인의 최종소비를 위해 직접 상품을 생산하는 자원봉사
- c) 가구에서 타인의 최종소비를 위해 직접 서비스를 생산하는 자원봉사

- 자원봉사자는 조사대상기간 중 적어도 1시간 이상 다른 사람의 편익을 위해 기관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 비강제적인 일을 한 일정연령 이상의 사람

- 다만 자원봉사자가 그들의 업무성과의 양이나 질에 관계가 없거나, 시장에서 받는 급여의 가치와 동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음

예) 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식비 및 교통비, 생활비 정도의 급료나 상징적 선물

□ 서비스의 자가생산(Own production of services)

- 서비스의 자가생산은 자신이나 자신의 가구의 최종소비를 위해 무급으로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포함

- a) 가계부 정리 및 가구관리, 가구를 위한 쇼핑
- b) 음식준비, 설거지, 청소, 정원관리, 세탁 등
- c) 아이.어른.아픈 사람 돌보기, 자녀통학, 물건수송 등

- 서비스의 자가생산자는 조사대상기간 중 적어도 1시간 이상 무급으로 서비스*의 자가생산 활동을 한 일정연령 이상의 사람

* 가구원이나 가구의 부지 및 시설 등의 유지, 관리, 보호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

【충족되지 않는 취업욕구(Unmet demand for employment)】

- 충족되지 않는 취업욕구(Unmet demand for employment)는 취업자나 다른 형태의 일을 하는 사람 모두에게 있을 수 있음
 - 이는 노동시간의 연장, 일을 하기 위해 구직활동, 취업가능성 및 취업희망의 표현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충족되지 않는 취업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실업자, 부분실업자,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로 구성되어짐

Unmet demand for employment		
unemployment	partial unemployment	Time-related underemployment

□ 실업(Unemployment)

- a) 조사대상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않았고(Without employment)
- b) 지난 4주안에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했으며(Seek employment)
- c) 조사대상기간에 2주간(또는 14일)을 더한 짧은 기간 안에 취업가능성(Available for employment)이 있는 사람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그간 실업자 요건에 일(Work)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일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취업(Employment)으로 변경되었음
- 취업을 하기 위해 구하는 직업은 기간, 유형, 위치에 관계없음
 - 임금근로, 자영업, 파트타임, 비공식적, 일시적, 계절적, 부정기 근로 등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모든 형태의 직업을 의미

※ 구직활동의 사례

- a) 공공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등록
- b) 고용주에게 의뢰하기
- c) 작업장, 농장, 공장, 시장 또는 다른 집합적인 장소 체크하기
- d) 신문이나 온라인 취업광고를 읽거나 올리거나 답하기
- e) 친구, 친척 또는 다른 관계자들에게 부탁하기
- f) 부지, 건물, 기계류, 설비 또는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재료 구하기
- g) 허가나 면허 신청하기

※ 취업광고를 보거나 읽는 것까지 구직활동에 포함시키는 것은 구직활동을 소극적인 범위로 확장시키는 것이어서 각국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으며, 우리나라도 같은 입장임

○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에 관한 구직활동과 자영업 그 자체를 구분하는 기준은 영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판단

* 영업시작을 위해 등록할 때, 첫 번째 주문을 받았을 때, 재원이 이용 가능할 때, 필요한 인프라나 재료들이 준비될 때

○ 그 밖에 무기한 해고(Indefinite lay-off), 오프시즌 동안의 계절적 노동자들이 수입창출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 기간이 연장된 휴직자, 다른 형태의 일이나 기타활동(공부, 자기돌봄, 문화 또는 유희적 활동)만 배타적으로 하는 사람은 실업자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실업자로 간주

○ 발령대기자(future starters)는 구직활동이 없더라도, 즉시 취업 가능성만 있다면 실업자로 분류

○ 취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직업훈련프로그램 참여자가 훈련 종료 후 취업이 확실하다면 실업자로 분류

[참고 1] 발령대기자(직업훈련 참가자 포함)의 대기 기간 문제

- ◇ 4주간 발령대기자의 경우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보다 취업자와의 결착도가 높으므로 실업자로 간주되는 것이 당연
- ◇ 다만 4주를 초과하는 발령대기자의 경우는 조사대상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보다 취업자와의 결착도가 낮으므로 실업자로 간주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대상기간				대상기간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구직활동(O)				취업가능기간 →							
			실업자	취업자							
구직활동(X)				취업가능기간 →							
			4주내 발령대기자	취업자							
구직활동(X)				미취업확실기간				취업가능기간 →			
			4주초과 발령대기자	실업자(또는 비경)				취업자			

□ 부분 실업(Partial unemployment)

- a) 조사대상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않았고(Without employment),
- b) 지난 4주 안에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Seek employment)을 했으나, 즉시 취업가능성(Available)이 없고,
- c) 지난 4주 안에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Seek employment)을 하지 않았으나, 즉시 취업가능성(Available)이 있음

- 비구직 즉시 취업가능자(Seek(×), Available(O))중에는 노동시장적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실망구직자(Discouraged job seeker)를 분리해서 확인할 수도 있음

IV. 그 밖의 논의사항

□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

- 취업, 충족되지 않는 취업욕구, 다른 형태의 일은 경제·사회적 성과측정과 이들 간의 관계연구를 위해 단일조사에서 자료를 수집(A single data source)하는 것이 바람직
- 포괄적 측정과 심층분석을 위해서는 별개 조사에서 자료를 수집(The use of different source)하는 것이 바람직
- 자료수집 방법에는 인구센서스 및 표본조사, 사업체센서스 및 표본조사, 행정자료 활용 등이 있으나, 개념, 정의, 분류, 조사대상기간 등은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함
 - ※ 한편 조사주기가 빈번하지 않다고 해서 조사대상기간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사되지 않는 기간은 차라리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

□ 노동시장 모니터링을 위해 발표가 필요한 지표

- 노동력(Labour force) : 취업자 + 실업자
 - ※ 일반시민(Civilian labour force)과 군인(Armed force)으로 분리될 수 있음
- 비노동력인구*(Persons outside the labour force) : 노동연령인구(Working age population) - 노동력(취업자+ 실업자)
 - ※ 현재 비경제활동인구(Not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와 같은 의미이며, 향후 국내 용어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확장노동력(Extended labour force) : 노동력 + 부분실업자
- 충족되지 않는 취업욕구를 가진 사람(Persons with unmet demand for employment) : 시간관련 불완전 취업자 + 실업자 + 부분실업자

○ 고용률(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 취업자 ÷ 노동연령인구

○ 취업률(Employment rate) : 취업자 ÷ 노동력

※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취업자를 고용률로, 노동력대비 취업자를 취업률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Eurostat에서는 Employment rate를 취업자 ÷ 노동연령인구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의를 제기

분자 \ 분모	인구(Population)	노동력(Labour force)
취업자 (Employment)	고용률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취업률 (Employment rate)
실업자 (Unemployment)	X	실업률 (Unemployment rate)

○ 국민계정에 포함되는 노동공급률(Rate of labour supply within the SNA) : 국민계정 내 노동공급자*(SNA workers) ÷ 노동연령인구

* 취업자, 상품의 자가 생산자, 무급수습업무자, 시장 및 비시장 단위에서의 자원봉사자, 타인소비를 위해 직접 상품을 생산한 자원봉사자

□ 충족되지 않는 취업욕구 측정 지표

○ 실업률(Unemployment rate) : 실업자 ÷ 노동력

○ 장기실업률(Long term unemployment rate) : 장기실업자 ÷ 노동력

○ 부분실업률(Partial unemployment ratio) : 부분실업자 ÷ 노동력 (또는 확장된 노동력)

○ 시간관련 불완전취업률(Rate of time-related underemployment) :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 노동력(또는 확장된 노동력)

○ 충족되지 않는 취업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Rate of persons with unmet demand for employment) : 충족되지 않는 취업욕구를 가진 사람 ÷ 노동력(또는 확장된 노동력)

□ 다른 형태의 일에 참가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 자가소비를 위한 상품 생산자비율(Rate of producers of goods for own use) : 자가소비를 위한 상품 생산자 ÷ 노동연령인구
- 자원봉사율(Volunteer rate) : 자원봉사자 ÷ 노동연령인구
- ※ SNA에 포함(또는 초과)되는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을 측정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른 실제 근로시간* 측정이 필요

* 실제 근로시간 = 직접시간 + 관련시간 + 지연시간 + 휴게시간

□ 자료 수집 및 공표 주기

- 월.분기 지표 : 취업, 실업을 포함한 충족되지 않는 취업욕구, 상품의 자가생산자 등 단기트렌드 및 계절적 변동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계
- 연간 지표 : 노동시장의 구조적 분석을 위한 통계, 전체 일(job)의 수, SNA 생산에 기여한 노동시간
- 2년 이상 주기 지표 : 다른 형태의 일에 참여한 것에 관한 통계, 다른 형태의 일과 취업, 소득, 경제.사회적 특징과의 관계 등 벤치마킹 및 심층 분석을 위해 필요한 통계
- ※ 그 밖에 동태적 분석을 위해 패널조사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통계표와 분류

- 취업을 포함한 각각의 일에 종사한 사람(또는 일) 수, 노동력, 충족되지 않는 취업욕구 지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주요 특징에 따라 세분화되어 공표할 수 있음
- 비노동력인구는 a) 노동시장 결착도, b) 구직이나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사유별, c) 주요 활동상태별로 분류될 수 있음

[참고 2] 비노동력인구(Persons outside labour force)의 분류

◇ 노동시장 결착도에 의한 분류

- a) 구직활동(○) & 취업가능성(×)
- b) 구직활동(×) & 취업가능성(○)
- c) 구직활동(×) & 취업가능성(×) & 취업희망(○)
- d) 구직활동(×) & 취업가능성(×) & 취업희망(×)

◇ 구직을 하지 않았거나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사유

- a) 나이, 질병, 장애, 학업
- b) 가족에 관련된 사유(임신, 육아 등)
- c) 노동시장적 사유(적당한 일자리를 구하는데 과거 실패, 경험.자격.기술 부족, 지역적 이유, 최근에 직업 상실)
- d) 인프라 부족(자산, 도로, 교통, 취업알선기관 등)
- e) 다른 소득의 존재(연금, 임대수입)
- f) 권리박탈

◇ 주요 활동 상태

- a) 학업, 무급의 수습업무, 상품의 자가생산, 서비스의 자가생산
- b) 자원봉사, 자기돌봄(질병 또는 장애), 여가(사회, 문화, 레크레이션활동)

- 취업이 아닌 다른 형태의 일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간대별, 산업대대분류 수준별(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통계표가 필요
- 시장 또는 비시장기관별 자원봉사, 타인의 최종소비를 위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가구별 자원봉사 통계표가 필요
- 상품의 자가생산에 관한 일이 중요한 지역에서는 취업자와 상품의 자가생산자를 합친 규모가 필요
- 취업이나 다른 형태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가족이나 가구의 특징에 달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혼인상태, 부양가족의 존재 등에 따라 구분할 필요

□ 평가, 전달, 보급

- 새롭게 만들어지는 통계를 주의깊게 해석하고,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뿐만 아니라 자료 품질의 체크하고, 자료수집과정, 추정에 관한 절차 등을 평가해야 함
- 통계의 보급을 위해서는 건전하고 공개된 전달 전략이 중요한데, 정부기관을 포함해 모든 통계이용자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고용통계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함
 - 또한 개정으로 인한 변화, 새로운 결의안에서 파생된 新시계열과 지표, 과거 시계열의 변화 등이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함
 - 가능하다면 공용파일들(익명화.비밀화된 마이크로데이터)은 분석가나 다른 관심있는 사람들이 이용.가능하도록 해야함
- 새로운 통계는 가능한 폭넓은 전자적 방식으로 보급되어야 하며,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주요 지표를 먼저 발표하고, 상세한 지표는 나중에 발표하는 방식으로 발간될 수 있음
 - 다른 형태의 일에 관한 통계의 공표 주기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

- 노동통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계에 대한 방법론적인 정보를 같이 보고해야 함
 - * 영역과 범위, 개념과 정의, 사용된 자료수집 방법, 표본크기 및 설계방법, 계절조정을 포함해 추정방법, 표본 및 비표본오차를 포함한 데이터 품질 등
 - 통계를 보급할 때 UN의 「공식통계의 기본원칙」 뿐만 아니라 개인 및 사업체의 비밀을 보호해야 함

□ 국제 보고

- 각국은 노동력과 파생된 지표, 특히 충족되지 않는 취업욕구 지표(전체, 성별, 연령별 등)의 지속적인 보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
- 각 통계는 기본적으로 5세단위로 표준화된 연령대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최소는 15~19세, 최대는 65세 이상임
 - ※ 국가별로 데이터 품질에 문제로 연령대 폭을 넓힐 수 있으나, 15~24세, 25~64세, 15~64세, 65세 이상은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새로운 통계에 적용되는 표준분류는 가장 최근의 국제표준 분류(직업, 산업, 종사상지위, 교육)를 따라야함
- 국제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개념, 정의, 방법론 등에 관한 필요정보를 제공해야 함
 - 국내기준과 국제기준이 다를 경우 가능하면 두 기준에 따라 각각 주요지표를 계산할 수 있도록 국내기준과 국제기준의 차이를 완전히 문서화해야 함

참고1 국제 고용지위상 분류(ICSE-93)의 개정

□ 개정절차

- 제19차 ICLS에 앞서 토론 자료 발간
- 제19차 ICLS에서 ICSE-93을 개정하는 1-day 워킹그룹 회의 진행
 - 제안된 옵션에 관한 소개, 작업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 모색

□ ICSE-93의 문제점

- 분류의 범위(employment, all activities within SNA, all forms of work)
- 주식회사의 소유경영자(Owner-managers of incorporated enterprises)

- a) 정기적인 급여를 그들이 소유한 회사로부터 받기 때문에 고용원(Employee)으로 간주되어짐
- b) 회사에 대한 지배권, 임금근로자의 계속적 보유, 가족 종사자들로부터의 조언가능 등 자영업자의 특징이 있음

⇒ ICSE-93에서는 국가적 상황에 따라 고용원 또는 자영업자로 분류

- 도급원(Contractors)

- a) 세금을 내는 분리된 사업자로 당국에 등록
- b) 고용된 기관이 사회보장비용을 책임지지 않음
- c) 계약관계가 정규고용원에 적용되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음
- d) 임금근로자와 일치하는 명백 또는 암묵적인 계약을 하고 있음

⇒ ICSE-93에서는 국가적 상황에 따라 고용원 또는 자영업자로 분류

- 고정기간(Fixed-term), 임시(Casual), 단기(Short term), 계절적(Seasonal) 취업자
- 도제, 수습, 인턴, 생산자조합 구성원(Members of producers' cooperatives)

□ 가능한 개정 방향

- 도급원과 주식회사의 소유경영인은 자영업자 또는 임금 근로자에 포함되며 어느 한쪽에만 포함되는 이분법은 금지
- 정규, 단기, 임시, 계절 고용에 관한 추가적인 범주를 생성

[개정안 예시 I]

Self-employed	◦Employer	.In own incorporated enterprise .In own unincorporated enterprise
	◦Own account worker	.In incorporated enterprise .In unincorporated enterprise .Independent contractor (in a third party enterprise)
	◦Contributing family worker	
Employee	◦Regular employee	
	◦Casual, short-term or seasonal employee	
	◦Apprentice, trainee or intern	

[개정안 예시 II]

Self-employed	◦Employer in own unincorporated enterprise	
	◦Own account worker in unincorporated enterprise	
	◦Contributing family worker	
Employee	◦In own incorporated enterprise	.With employees .Without employees
	◦Regular employee	
	◦Casual, short-term or seasonal employee	
	◦Apprentice, trainee or intern	
	◦Independent contractor (employed in a third party enterprise)	

참고2 Green job의 통계적 정의

- 경제를 그린화하고 그와 관련해 취업의 영향을 분석하는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지표를 생산하기 위함
- 이는 제19차 ICLS에서 Green job의 정의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관련된 국제통계 표준의 발전을 위해 권한을 획득하며, 선택된 방법을 많은 나라에 확대 적용하기 위함
- ILO에 조언을 할 수 있는 비공식적 전문가 그룹을 구성, 정책 검토 및 문헌 연구, 핵심 자료 이용자의 컨설팅, 정책분석가의 관련회의 참석, 5개국 정도의 사례연구 등으로 진행